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0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홍기원

박 정・김남근・민형배

이연희 · 김원이 · 김용만

서영석 · 서미화 · 이인영

강훈식 • 박수현 • 문진석

이재관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 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등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
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	공고) ①
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	
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	
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	
·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은 제외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등
	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
	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
	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